



강북구의회
GYEO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4년 11월 10일
(월요일)

강북신문 5면

박문수 의원, 강북문화원 지원 육성조례 제정 제안

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(미아동, 송중동, 번3동)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11월3일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'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'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했다.

이번 조례(안)은 강북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,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,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



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.

또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·관리하고,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의 금은 지역문화 활

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자수익금의 10% 이상은 재적립 하고,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 규모, 예탁현황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서울포스트 4면

박문수 의원...강북문화원 관련 조례(안) 제안설명



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(미아동, 송중동, 번3동)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11월3일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'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'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였다.

이번 조례(안)은 서울특별시 강북

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 제1조 강북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(안)제3조~제5조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,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,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, (안) 제11조~제13조에서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·관리하고,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재적립하고, 문화원장은 매 회계

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 규모, 예탁현황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박문수 의원은 "지역문화·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강북구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하였다."고 밝혔다.

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'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'은 11월 1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.

박문수 의원,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(안) 제안설명

“지역문화·예술 진흥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”

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(미아동, 송중동, 번3동)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11월3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’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였다.

이번 조례(안)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 제1조 강북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(안)제3조~제5조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



으로 편성하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,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,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.

(안) 제11조~제13조에서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·관리하고,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자수

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재적립 하고,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 규모, 예탁현황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박문수 의원은 “지역문화·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강북구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하였다” 고 밝혔다.

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‘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’은 11월1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.

시사프리 4면(11/12일자)

박문수 강북구의원,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 제안 설명

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(미아동, 송중동, 번3동)은 제183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3일 개최된 행정보건의위원회에서 ‘서울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’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.

이번 조례(안)은 서울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 제1조 강북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(안)제3조~제5조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,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, 그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용도



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, (안) 제11조~제13조에서 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·관리하고, 기

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원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

자수익금의 10% 이상은 재적립 하고,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운용 규모, 예탁현황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
이날 박문수 의원은 “지역문화·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강북구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발의했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‘서울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(안)’은 지난 1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.

유영일 기자